#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7

발의연월일: 2021. 3. 29.

발 의 자:김영호·강득구·김민기

박성준 • 박홍근 • 안민석

양경숙 · 용혜인 · 윤준병

이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「공직자윤

리법」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신 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47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7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7조제1항의 죄
- 48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2를 위반한 죄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적용례)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「공공 주택 특별법」 제57조제1항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2를 위반 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·추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.